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48
----------	------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5년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내역 : 총 1개 정책사업(재무활동), 678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체육진흥기금	14,290	14,968	678	4.7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0,987	10,987	-	-
시민생활체육 진흥	1,196	1,196	-	-
일반예산(재무활동)	2,097	2,775	678	32.3
보전지출	2,097	2,775	678	32.3
여유자금 예치	2,097	2,775	678	32.3
행정운영경비	10	10	-	-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계	14,290	14,968
이자수입	2,337	2,337
전입금	7,388	7,388
예치금회수	4,565	5,243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계	14,290	14,968
비용자성사업비	12,183	12,183
기본경비	10	10
여유자금예치	2,097	2,775

3. 검토의견²⁾

- 서울특별시는 지난 2000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6억 7,8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에도 6억 7,800만원을 **여유자금예치**로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20억 9,700만원)보다 32.3%, 6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⁴⁾

2)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5.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6.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48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내역 : 총 1개 정책사업(재무활동), 678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D=C/A)
체육진흥기금	14,290	14,968	678	4.7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0,987	10,987	-	-
시민생활체육 진흥	1,196	1,196	-	-
일반예산(재무활동)	2,097	2,775	678	32.3
보전지출	2,097	2,775	678	32.3
여유자금 예치	2,097	2,775	678	32.3
행정운영경비	10	10	-	-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계	14,290	14,968
이자수입	2,337	2,337
전입금	7,388	7,388
예치금회수	4,565	5,243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계	14,290	14,968
비용자성사업비	12,183	12,183
기본경비	10	10
여유자금예치	2,097	2,77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민주 (☎ 2133-2679)